

5.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6,508호 1999. 8. 6.

개정이유

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이 개정(1999. 2. 8, 법률 제5864호)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·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으로 정하고,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 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(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).
- 나.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·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(령 제6조의2 신설).
- 다.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

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.(령 제7조의2 신설).

- 라.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, 분뇨처리시설등 설계·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(령 제27조의2·제29조의2 및 제29조의4 신설).
- 마.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(령 제29조의5 신설).
- 바. 오수처리시설·단독정화조·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축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고장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(령 제32조의2 신설).